

學點單位 登錄金制度의 導入과 算定에 관한 研究



李 峴
(成大 經商大 副教授)
尹 桂 豐
(서울大 經營大 助教授)
鄭 基 善
(公認會計士)

序言—問題의 提起

文教部에서는 우리 나라의 大學을 變化하는 社會에 副應하고, 內實 있는 大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1年 9月에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를 발족시키고, 大學教育改革을 위한 基本方案을樹立하였다.

이에 따라 既存 大學中 實驗大學을 선정하여 1973年부터 大學教育에 대한 改革을 實施하게 되었는데, 그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1) 教育의 內的 充實을 꾀하기 위하여 大學卒業要求學點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減縮調整하였다.

2) 個性에 맞는 專攻選擇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學科別 定員制를 大學別 또는 系列別 定員制로 轉換한다.

3) 卒業生의 進路機會擴大와 넓은 영역에서의 學問履修를 돋기 위하여 副專攻制를 최대로 활용토록 한다.

4) 勉學雰圍氣를 造成하고, 能力 있는 者에 대한 早期 社會進出을 돋기 위하여 能力別 卒業制를 실시한다.

5) 年中 無休의 大學運營을 위하여 季節修業制를導入한다.

6) 學生에게 進路選擇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複數 專攻制를 권장한다.

이와 같은 基本方向에 따라 1976年末에는 實驗大學 運營委員會를 조직하고, 基本方向을 달성하기 위하여 實踐計劃을樹立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各 實驗大學에서는 상당한 進步를 보여왔으며 一部地域의 경우는 數個大學이 相互 學生을 交流시켜 學點履修를 許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季節修業도 施行이 되고 있다.

그리고 大學行政面에 있어서 實驗大學制度가 가지고 있는 基本方向에 따라 ① 能力別 受講許容, ② 季節別 學期運營의導入으로 學點取得時期가 短縮됨에 따라 能力 있는 學生의 早期卒業이 實現되게 되었다.

이것은 勉學雰圍氣의 造成을 위하여 좋은 現象이나 大學財政面에 있어서는 큰 負擔이 되고 있다(現在 早期卒業生의 數字는 미미하나 앞으로는 더욱 增加할 것으로豫想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大學은 本論에서 後述하는 바와 같이 校學校財政이 登錄金에 의존하는 比重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登錄金制의 새로운 問題點에 대한 解決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登錄金制度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學期當 登錄金制度와 外國에서 실시되고 있는 學點當 登錄金制度로 区分된다.

登錄金制度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學年制가 시행되고 있는 國家에서는 固定登錄金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學點制를 시행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學點當 登錄金制를 실시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는 學校에 따라 金額은 다르지만 正規學生은 學期登錄金을, 時間制學生은 學點當 登錄金을 이용하고 있다. 學點當 登錄金은 이와 같은 季節學期 受講生이나 다른 學校에서 일부 學點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學點當 登錄金을 過小하게 算定할 경우에는 大學財政에 不利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過大하게 算定할 경우에는 學生에게 不利하게 될 뿐만 아니라 季節修業이 忌避될 염려마지 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學點單位別 登錄金을 適正하게 算定할 수 있는 公式을 마련하여 各大學에서 便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위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 ①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을 위한 前提條件
- ②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方法을 검토
- ③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을 위한一般的 基準
- ④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의 計算

I. 研究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學點單位 登錄金의 原價計算을 하는 算定方式을 研究한 것으로, 標本으로 選定한 數個大學의 會計資料를 분석하고, 國內外의 문헌을 검토하여 算定方式을 比較 檢討하였다.

當初의 研究는 實際로 季節學期를 운영하고 있는 大學의 會計資料를 分析하고, 本研究에서 제시한 計算公式에 따라 學點單位別 登錄金을 計算하려고 하였으나 各大學의 會計資料가 충분하지 못하고, 管理會計를 실시할 수 있는 體系를 統一의으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實제로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本研究가 實제로 學點當 登錄金을 算定하기 위한 研究이니만큼 現在 서울과 地方에 있는 3個大學의 資料를 참조하여 本研究에 알맞게 개편한 후 學點當 登錄金을 試算하였다.

II.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의 必要性과 登錄金 算定方法

大學運營에 있어서 2大課題는 教育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教育課程을 계획하는 問題와, 大學運營을 위하여 所要되는 財源의 效果의인 充當問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大部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財政問題에 있어서 登錄金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私立大學의 경우가 國立大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따라서 아무리 理想의in 學事改革이 계획된다 하더라도 財政의in 뒷받침이 없이는 大學教育의 效果를 거둘 수가 없으므로 위의 2大課題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登錄金의 水準은 大學教育을 위한 登錄原價(費用)를 最低限界로 하고 教育의 質의 改善과 最高의 研究權關으로서의 發展을 위하여 向後研究開發에 對處할 수 있는 費用을 포함하여야 하나, 施設費도 費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그리므로 登錄金 算定에 앞서 登錄金 算定을 위한 文教當局의 基本政策과 登錄金 算定에 관한 哲學이 定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登錄金 算定을 위한 基本哲學, 즉一般的 基準에 대하여는 다음 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本節에서는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의 必要性과 算定方法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1.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의 必要性

文教部가 實驗大學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했던 改革의 主要內容 中에는 勉學霧國氣 조성과 勉學霧國氣 조성의 一環으로서 能力 있는 學生에 대해 早期 社會進出을 돋기 위한 能力別卒業制의 實施 및 年中無休의 大學運營을 위하여 季節授業制를 導入하는 方案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能力別卒業制와 季節授業制의 導入은 必然의으로 早期卒業을 誘導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學校經營上의 對應策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現在와 같은 登錄金 制度를 그대로 適用하는 경우에 현재와 같이 登錄金이 學校財

政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早期卒業에 따른 登錄金의 減少로 大學財政은 破綻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研究目的을 달성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效果가 기대된다.

- ① 學點單位 登錄金制의 合理性에 의해 大學經營에 있어서豫見되는 財政難을 事前에 예방하고, 學生들에게 過重한 負擔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實驗大學의 所期目的을 달성하게 한다.
- ② 校別로 相異한 財政狀況을 반영하여 登錄金을 다르게 받는다 하더라도 學點別로 登錄金統一算定公式을 제공하여 各大學이 같은 方式으로 편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制度를 마련한다.
- ③ 各大學校 또는 大學에 수강신청을 하여 學點을 이수할 경우 各學校別로 對替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한다.

2. 登錄金 算定方法

登錄金 算定方法은 다음 세 가지 種類로 區分된다.

1) 學期別 固定額 徵收方式

一律的으로 登錄金額을 算定하는 固定額 徵收方式으로서 學年制 教育에 重點을 두는 初·中·高等教育課程이나 學年이라는 概念을 使用하는 大學에서 흔히 適用된다.

2) 固定額 + 追加經費 徵收方式

基本的인 登錄金額을 策定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經費, 즉 實驗實習費, 圖書費, 其他活動費를 附加시키는 附加額 徵收方式으로서 历시 學年制의 運營方式에서 使用되며 固定額 徵收方式의 變形된 方式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各大學에서 現在 適用하고 있는 方法이다.

3) 學點別 登錄金 決定方式

基本登錄金額은 策定하되 授業料는 申請하는 學點單位에 따라 增減調整할 수 있는 學點單位登錄金 徵收方法으로서 能力別卒業을前提로 한 學點制 大學에서 適用될 수 있는 方法이다.

위의 세 가지 登錄金 算定方式中 本研究에서 다루어야 할 方式은 세번째 學點單位別 登錄金 徵收方式이나 이 方法의 適用에 있어서는 文教當局의 政策的인 問題와 大學의 實務上 適用에 있어서의 여러 問題가 先決되어야 한다.

III. 學點單位 登錄金制度 導入에

따른 前提條件

1. 大學財政의 健全化

現在各大學에서 適用하고 있는 登錄金 徵收 method의 變更 없이 實驗大學이 運營된다면 大學은 早期卒業에 該當되는 學生에 대한 登錄金 amount收入의 減少를 가져오고, 早期卒業者數의 數가增加할 수록 大學財政은 더욱 惡化될 것이다.

따라서 學點單位 登錄金制度의 導入은 大學財政을 적어도 惡化시키지 않는 線을 基礎로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改善發展시킨다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함으로써 各大學이 이制度를 採用할 수 있게 되고, 또 학생들에게 장려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上記制度下에서는 登錄金이 各大學 및 大學生 個個人에게 주어진 與件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算出되게 되므로 登錄金額도 매우 多樣化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現在의 登錄金 徵收方法과 比較해 볼 때 各大學이 適正하게 學點單位 登錄金制度를 運用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上記制度의 導入과 더불어 文教當局에서는 各大學 財政面의 運用을 會計監查 및 原價管理의 觀點에서 보다 細密하게 감독할 것이 要求된다.

2. 事前 受講申請制度의 採擇

學點單位 登錄金制度의 導入은 학생들이 申請한 學點의 數를豫想되는 大學의 運營費와 對應시켜 學點當 登錄金을 算出하는 데에 있으므로 事前에 受講申請을 받게 되면 學點單位 登錄金制度下에서 야기될 수 있는 諸問題點을 事前에 解決 또는 調整할 수 있다. 따라서 現在의 受講申請方法과는 달리 受講申請을 몇 달 앞당겨 받게 되는데, 例를 들면 1學期 受講申請時에 여름 季節學期에 대한 受講申請도 받고, 1學期 正常學期 終了時에 2學期 受講申請을 받는 方法이다.

또한 上記制度의 採擇과 더불어 季節學期 受講申請에 한 科目當 最小受講申請者的 數를 일

마로 할 것인가도決定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10名을 最少單位로 할 것인가 아니면 7名을 最少單位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先決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事前 受講申請制度를 採擇함으로써 最少 학생수에 未達하는 科目의 廉講을 該當學生에게 早期에 通報하여 줄 수 있게 된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3. 施設費範圍의 決定

1976年度를 基準으로 볼 때,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70%(學生數基準) 程度는 私立大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私立大學의 設立主體는 學校法人이다.

現在 學校法人의 大部分은 私學을 運營 管理하고 發展시킬 財源을 스스로 調達하여 供給하지 못하고, 學生들이 納入한 登錄金으로 管理하는 機能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大學의 施設投資를 위한 財源中 大學의 創立者(財團包含)에 의하여 調達되는 財源은 그比重에 있어 微少하다. 따라서 大學의 施設費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登錄金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는 것이 現在의 實情이므로 施設費도 大學運營費 範圍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施設費를 어디까지 認定하여 包含시킬 것인가에 對하여는相當한 問題가 內在하고 있다.

歐美 各國의 先進國에서는 根本的으로 大學에 대한 施設投資(土地買入, 建物의 建立, 研究機關의 買入 등)는 학생들의 登錄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創立者, 地域社會 또는 國家로부터 調達된 財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現存建物에 대한 減價償却도 行하지 않는 것을 學校法人 會計處理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大學의 경우는 施設費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形態로 크게 나누어 把握되어야 한다.

첫째 類型은 어느 程度의 施設投資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 당분간은 施設의 維持를 위한 費用만이 所要되고 施設投資의 必要性이 발생하더라

도 小規模의 投資가 要求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該當投資財源을 登錄金에 依存하더라도 餘他 運營費規模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大學들을 들 수 있다.

둘째 類型은 施設投資가 매우 低調했거나 新設大學으로서 당분간 莫大한 施設投資가 예상되는 大學으로서 該當財源을 登錄金에만 依存하게 되면 餘他 운영비의 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現在의 등록금 수준만으로는 施設費 財源을 마련할 수 없는 大學도 있다.

따라서 後者の 경우에는 施設投資가 必須의인 것이라도 그 財源을 登錄金에만 의존할 수 없고一部는 登錄金에서, 나머지는 創立者的 出捐, 外部借入 또는 補助金 등으로 調達되어야 한다.

그러나 外部借入의 比重이 클 경우 支給利子의 負擔이 커지므로 이를 運營費 範圍에 算入시키는 것도 問題가 된다. 이와 같이 各大學이 處해 있는 相異한 與件을 모두 참작하여 施設費中 얼마만큼을 登錄金에 의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個別의으로 判定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施設費는 現在 大學의 規模(學生數, 資產規模, 運營費의 規模)를 감안하여 規模別로 一定比率만을 上限線으로 認定하여 주되 期成會의 決議에 있어서도 그 限度內에서만 支出하도록 許容해야 한다.

위의前提下에서의 施設費의 限度는 다음 例와 같이 決定된다.

$$\text{總財政規模} \times x\%^{(1)} = \text{시설비 인정액}$$

4. 大學 및 大學院 運營費의 區分

大學만을 運營하고 있는 大學은 問題가 없으나, 大學院을 設置하고 있는 大學의 경우에는 登錄金, 入學金과 같은 收入에 대하여는 大學分과 大學院分이 區分되나 運營費는 區分하지 아니하고 혼합된 채 計上하고 있다.

이는 教授陣을 大學과 大學院 소속으로 區分하기가 곤란하므로 人件費의 區分이 곤란해지고, 또한 其他 校費도 혼합되어 있는 데에 基因한다.

一般的으로 大學院을 設置하고 있는 大學은

(1) 施設費範圍는 문교당국의 決定에 따라 等級을 구분하여 定해 질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類型은 教授의 數가 定員에 比하여 아주 부족한 경우로서 大學의 教授가 適當 責任時間 을 教授하는 外에 大學院에서 追加로 講義를 맡는 경우로써 이와 같은 類型은 大部分의 私立大學에서 볼 수 있다.

둘째 類型은 教授의 數가 定員에 比하여 比較的 充裕한 경우로서 全體講義時間 을 主體教授에게 고르게 配定하자면 1人當 平均配定時間은 모두 責任時間보다 모자라게 된다.

따라서 골고루 時間을 配定하기 보다는 一部教授를 아예 大學院講義에만 配定하는 方法을 擇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類型은 教授確保가 充分한 國・公立大學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類型의 大學에서 教授에 對한 人件費를 大學과 大學院으로 正確히 區分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理論的으로 後者の 경우에는 講義時間數 比例에 의하여 나누고, 前者の 경우에는 大學院 講義에 따라 大學教授에게 追加로 支給하는 人件費를 大學院에서 負擔할 人件費로 보아야 하나, 두 가지 類型으로 확연히 區分되지 아니하는 大學도 많이 있으므로 이의 區分이 쉽지 아니하다.

이 밖에도 其他 校費의 區分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大學院을 설치하고 있는 大學의 경우에는 豊算 및 決算書의 作成時に 大學院만이 設置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大學의 運營費를 策定하고, 大學 및 大學院의 總 運營費에서 大學의 運營費를 差減한 것을 大學院 運營費로 區分하는 方法을 窮餘之策으로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指述한 바와 같이 이의 區分이 쉽지 아니하므로 一部大學에서 이를 惡用하여 大學 쪽에 過大한 運營費를 負擔시켜 놓고, 이를 根據로 學點單位登錄金을 算定할 경우 大學의 學生들은 不當한 費用을 더 負擔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點에 의하여서는 文教當局이相當한 注意를 기울여 適切한 監督과 指導

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을 위한 一般的 基準

大學은 營利를 目的으로 運營되는 機關이 아니므로 大學의 主收入源인 登錄金의 算定에 따른 基本哲學, 즉 一般的 基準을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의 原價計算에 있어서의 一般的 基準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學點單位登錄金의 算定에 있어서는 次元을 달리하는 原價計算이 이루어져야 한다.

大學은 非營利와 社會公共目的을 위한 機關이라는 點에서는 非營利 醫療奉仕를 目的으로 하는 病院과 같은 機關의 醫療酬價 算定을 위한 一般的 基準과 共通點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大學運營이 病院運營과는 相異한 점이 많으므로 差異點 역시 많이 가지고 있다.

本研究에서는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을 위한 一般的 基準을 病院의 醫療酬價 算定을 위한 基本哲學을 參照하고, 또한 大學運營의 特殊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一般的 基準을 設定하였다.

1. 大學運營費用의 範圍

學點單位登錄金制度의 도입에 있어 登錄金 收入에 對應되는 大學運營費用의 範圍를 어디까지 擴大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重要한 基準의 하나가 된다.

國立大學과 私立大學에서는 各其 상이한 費目을 使用하고 있어 명칭에는 差異가 있으나 運用費用은 다음과 같이 크게 區分할 수 있다.

人件費：收入源泉에 관계없이 教職員이 提供한 労力의 對價로 支給되는 一切의 費用을 말한다.

○專任教員 細與(基本給, 賞與金 包含)

○講師料

○事務職 人件費(基本給, 手當, 賞與金 포함)

(2) 大學만이 設置된 경우를 假定하고 大學運營費를 策定하고 總運營費에서 이를 差減하여 大學院運營費를 算出할 경우, 一般的으로 大學院은 登錄金 收入이 運營費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學生數가 相對적으로 많은 學科에 局限하는 것이며, 基礎學生數(例: 7名線)를 겨우 초과하는 學科의 경우에는 오히려 反對의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其他 經費：校費支出項目中 人件費를 除外한 모든 費用을 말한다. 따라서 校費支出項目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自律的 經費, 施設費, 其他 期成會費, 實驗實習費와 當該年度의 經常的인 大學教育活動과 直接的인 關聯을 갖지 않는 借入金償還金, 過年度支出補助費 等은 除外한다.

- 公共料金
- 연료비
- 운송費
- 車輛維持費
- 圖書費
- 需用費
- 施設維持費
- 研究費
- 장학비
- 保健體力管理費
- 實驗費
- 入試管理費
- 學生指導自體經費
- 판공비
- 會議費
- 行事費
- 諸稅公課金
- 雜支出

自律的 經費：學徒護國團의 運營維持 및 學生自律活動을 위한 諸經費를 포함한다.

實驗實習費：학생들의 實驗 및 實習을 위하여 支出되는 諸經費를 포함한다.

施設費：施設費는 每年 反復的으로 支出이 행하여 지지는 않지만 大學의 長期的 成長을 위하여 必要한 支出로서 會計學에서 말하는 資本的 支出에 해당하는 支出을 말한다. 따라서 備品購入費와 小規模修繕費는 施設費에서 除外되어 其他 校費에 포함한다.

- 土地買入費
- 財產取得費
- 大修繕費
- 施設附帶費

其他 期成會費：支出額中 教職員에게 研究手當으로 支給되는 人件費와 施設費를 除外한 支出額을 말한다.

위에서 羅列된 여러 費用項目中 學點單位登錄

金算定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項目은 다음과 같다.

1) 其他 校費中 研究費의 포함 여부가 決定되어야 한다.

各 大學은 學生教育, 產學協同, 社會發展 等의 目的으로 많은 研究所를 設置運營하고 있으나 이 中 獨立採算이 可能한 研究所는 小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大學 또는 外部機關으로부터의 補助를 必要로 한다.

研究所의 設立目的이 現在 在學中인 學生들의 教育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研究所의 運營費用은 당연히 其他校費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研究所의 運營費用이 未來의 學生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現在 在學中인 學生들이 未來의 學生들의 費用의 一部를 부담하게 되므로 受益者 負擔原則에는 違背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학생들이 現在의 학생들의 費用을 一部 負擔한다는 循環論法으로 생각할 경우 現在의 學生들이 未來에 收益이 돌아오는 研究費를 負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大學의 存續年限이 限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存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研究費는 其他校費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實驗實習費도 大學運營費에 一括하여 포함시킬 것인지의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實驗實習費는 各單科大學別로 金額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文科와 理科사이에 差異가 매우 크다. 따라서 實驗實習費를 大學運營費의 一部로 보고 總學點申請數로 나누어 學點當 負擔費用을 計算한다면 理科生들은 약간의 利得을 보고 文科生들은 相對的으로 損害를 보게 된다. 따라서 實驗實習에 따른 知識과 經驗의 習得을 감안한다면 受益者 負擔面에서 볼 때 衡平에 어긋나게 된다.

이와 같이 衡平에 어긋나는 일은 文科, 理科間 뿐만 아니라 單科大學內에서도 科別로 實驗實習의 差異가 클 경우에 야기되므로 實驗實習費는 全體 運營費에서 分離하여 學點과 關聯시켜 把握하되, 科別로 區分하여 策定하는 것이 가장 妥當한 方法으로 판단된다.

本 研究에서는 個別 把握하는 方法을 適用하

였다.

3) 施設費의 資本的 支出 與否에 對한 基準이 確立되어야 한다.

大學에서 支出하는 施設費도 會計學의 觀點에서 볼 때 施設費의 支出에 의하여 資產의 價值을 增加시키거나 耐用年數를 延長시키는 資本的 支出과 그렇지 아니한 收益的 支出로 區分할 수 있다.

現在 資本的 支出 與否 判定에 관한 規定은 稅法에만 提示되어 있으므로一般的으로 稅法의 規定을 따르고 있으나 大學은 非營利組織이므로 이를 準用할 必要는 없다. 따라서 稅法의 規定을 기초로 하되 다음의 例와 같이 基準을 強化하여 資產의 取得 또는 補修 時에 適用할 것이 要望된다.

(1) 單位當 300,000원 以上(실제 狀況에 따라 下向調整可能)인 資產의 取得 또는 補修

(2) 耐用年數 2年 以上인 資產의 取得, 또는 補修에 따라 耐用年數가 2年 以上 延長되는 경우

資本的 支出은 위의 두 가지 條件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해당된다.³⁾

2. 大學收入의 範圍

大學의 收入은 크게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區 分	實 考
納入金——	入學金 授業料 願書代 受驗料	
手數料——	證明料 手數料	
期成會費——	會 費	
自律的經費		
實驗實習費		
轉入金——	財團補助 國家 其他	
雜收益——	預金利子 財產處分收入 雜收入	期成會費, 自律的經費 및 實驗實習費의 移越金 포함
移越金——	前年度移越金	

(3) 文教當局의 決定에 따라 例를 들면 單位當 300,000원 및 耐用年數 2年과 같이 規定할 수 있다.

위의 여러가지 收入中 大學의 運營費에서 差減되어야 할 收入은 다음과 같다.

1) 入學과 關聯된 收入

納入金中 入學金과 手數料中 願書代, 受驗料 등은 入學과 關聯된 收入이며 이에 對應되는 費用은 手當(一部 大學은 監督敎員에게 手當을 支給) 및 入試管理費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大學은 手數料 收入만으로도 入試에 드는 諸費用을 초과하고 있으면 反對의 경우인 大學에서는 入學金 收入을 감안하여 收入이 費用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入學과 關聯된 收入은 運營費에서 差減되어야 한다.

入學金은 在學生들로부터도 入學時에 一定金額을 모두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運營費에서 差減하여 學點에 의하여 負擔할 費用을 줄여 준다 하더라도 循環論法에 의하여 衡平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其他收入

手數料 收入中 앞에서 差減한 願書代와 受驗料를 除外한 證明料(成績證明書 등의 發給에 따른 收入) 및 手數料와 雜收益(預金利子, 財產處分收入 및 雜收入)은 大學運營에 따른 附隨收入으로 볼 수 있다.

手數料 收入에는 이에 대응하는 事務職員의 人件費와 複寫費 등 費用이 所要되나 雜收益은 대부분 大學의 運營 또는 財產의 運營에 따른 收入이므로 이들 收入은 大學運營費에서 差減되어져야 한다.

3) 轉入金

私立大學의 경우 財團으로부터 받는 財團轉入金, 國·公立大學이 政府로부터 받는 國家補助金(私立大學도 약간 받는 경우가 있다) 및 特定目的을 위하여 外部機關 등으로부터 받는 補助金 등은 이러한 補助金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에 대응하는 費用만큼을 負擔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大學運營費에서 差減되어야 한다.

그러나 期成會費, 自律的經費, 實驗實習費 및 移越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大學運營費에서 差減하지 않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1) 期成會費

現在大學들은 期成會費를 學生으로부터 徵收하여 餘他收入으로 備을 수 있는 運營赤字를 예워가고 있다.

즉 명칭은 授業料와 다르나 期成會費의 상당한部分이 教授職 및 事務職의 研究手當의 名目으로 支出되는 바, 이는 本俸등으로는 낮은 給與水準이므로 이를 補完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施設費나 運營費名目으로도 많이支出되고 있다.

期成會費는 私立大學의 경우 授業料收入과 비교해 볼 때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大體로 授業料收入의 50%線以上), 國·公立의 경우에는 國家補助金 때문에 授業料가 매우 심으로 期成會費가 오히려 授業料보다 큰 경우가 보통이다.

이와 같이 比重이 큰 期成會費를 運營費에서 差減하고 學點에 의하여 負擔할 費用, 즉 學點單位登錄金을 算出한다면 期成會費分은 學生數에 의하여 均等하게 配分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學點에 의하여 負擔할 費用이相當히 줄어들게 되므로申請學點數의 多寡에 따라 登錄金의 差異는 줄어들게 되며, 특히 國·公立大學의 경우 差異는 미세하게 된다. 따라서 期成會費는 명칭은 다르나 授業料의 補完을 위한 收入이라고 看做하여 이를 運營費에서 差減하지 아니하고 學點에 의하여 負擔할 費用을 산출해야 보다合理的이라고 판단된다.

2) 自律的 經費

自律的 經費는 運營費에서 差減하여 計算하는 方法도 있으나 自律的 經費는 申請學點數에 관계없이 학생수로 均等하게 나누어 負擔할 費用이므로 固定費와 變動費區分에 있어서는 固定費로 處理한다. 따라서 뒤에서 說明할 여러가지 計算方式中 固定費와 變動費를 區分하여 計算하는 方式은 만족시켜 주게 되며, 運營費 全體를 申請學點數에 의하여 나누어 計算하는 方式에서는 個個費目的 特性을 일단 무시하고 계산하는 것 이므로 全體收入中 적은 比重을 차지하는 自律的 經費를 運營費에서 差減하지 않더라도 크게 矛盾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3) 實驗實習費

일단 運營費에서 差減되나 學科別, 學年別로 다시 學點數에 의하여 計算되므로 문제를 惹起하지 않는다.

4) 移越金

移越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差減하지 아니한다.

첫째, 모든 組織은 이의 運營을 위하여 運營資金(또는 運轉資金)을 必要로 한다. 大學도 月別로 볼 때 登錄金 納入時期가 언제인가에 따라 資金保有水準은 상당한 起伏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安定된 運營을 위하여는 상당한 起伏을 보일 경우에도 最低水準의 資金은 確保되어야 한다. 따라서 一定水準(例 全體收入規模의 以內)의 移越金은 認定되어야 한다.

둘째, 學點單位登錄金制下에서 算定된 登錄金은 대체로 百원 또는 10원 單位까지 決定되어 나오나 便宜를 위해서는 勿論 登錄金 收入의 安定을 위해서 百원 以下은 四捨五入 또는 切上하여 適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에도豫想이 틀린 경우나, 學點單位登錄金 計算에錯誤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對備策으로 약간의 資金은 留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移越金은 運營費에서 差減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規定하였으나 移越金의 許容水準은 政策的으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3. 超過取得學點에 대하여 登錄金을 賦課할 것인가의 問題

學點의 超過取得이 許容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新入生中 語學등에 우수한 學生에 대하여 特別試驗을 치를 수 있는 機會를 주되 合格者에 한하여 學點을 申請하지 아니하더라도 學點을 取得한 것으로 認定해 주는 경우이다.

둘째, 各 學期의 成績이 一定水準 以上인 優秀學生에 대하여 一定學點(例 3學點)까지는 例外적으로 基準學點 以上的 學點取得機會를 賦與하는 경우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와 關聯되어 惹起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1) 두 가지 경우 중 前者の 경우 特別試験에 對한 受驗料는 大學에 따라 徵收하는 곳도 있고 徵收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徵收를 할 경우에도 受驗料로 出題教授, 監督教授의 手當, 試験紙 印刷費 등의 費用을 补償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特別試験에 對한 公告를 할 때 受驗料는 規定대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하므로 수험생이 많을 경우에는 關聯費用을 补償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反對의 경우에는 費用이 受驗料 收入을 초과하게 된다.

理論的으로 볼 때에는 特別試験實施에 따른 收入과 費用은 區分 經理하여야 하나 費用 自體가 大學運營費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微少하고 受驗料를 받지 아니하는 大學도 있다는 點을 감안할 때 受驗料 收入이 受驗費用을 补償할 수 있는 가의 問題는 무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受驗料를 받는 경우에는 大學의 其他收入으로 處理하고, 受驗費用은 其他 校費로서 相互 關聯시키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2)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該當되는 경우로서 超過取得學點에 對하여 해당학점에 대응하는 登錄金을 賦課할 것인가의 與否가 決定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主張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主張은 登錄金을 賦課하지 않아야 한다는 主張이다.

超過學點을 取得하도록 許容하게 된 동기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早期卒業의 기회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大學의 免學費團氣를 助成하기 위한 것이다. 超過取得 學點에 대해 登錄金을 賦課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基本의 인 취지에 어긋나며 學點을 超過하여 取得하는 學生數도 全體學生數에 比하여 볼 때 微少하므로 成績이 우수한 學生에게 超過取得學點에 對하여 登錄金을 免除하는 것은 大學全體 登錄金 收入面에서 볼 때 커다란 減少要因은 되지 아니한다(장학금 支給의 性格도 있으므로 이를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같이 인정하면 된다).

또한 減少部分만큼을 다른 學生에게 負擔시킨다 하더라도 큰 負擔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超過取得學點에 對하여는 登錄金을 賦課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主張은 登錄金을 賦課하여야 한다는 主張이다. 特別試験에 의한 學點의 초과취득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賦與되는 學點의 초과취득은 모든 학생들에게 그 機會는 주어지나 실제로 機會를 갖는 학생은 少數인 것이 普通이다.

위와 같이 惠澤을 받게 되는 學生은 特別試験에 따른 免除科目的 學點에 所要되는 時間을 다른 科目에 轉用할 수 있게 되어 그 만큼 時間上의 利益이 있으며, 성적우수 학생인 이들에게는 이 밖에도 장학금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起過取得學點에 대하여 登錄金까지 면제한다면 少數의 學生들만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享有하게 된다.

또한 大學財政面에서 볼 때에도 實驗大學이 本 軌道에 오르고 면학분위기가 高潮되어 위와 같은 惠澤을 받게 되는 學生數가 增加하는 경우에 만약 登錄金을 계속 免除한다면 現在와 같이 大學財政이 登錄金에 依存할 경우 그것이相當한 赤字要因이 될 것이 우려된다. 다른 학생들의 學父母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면제된 登錄金을 代身負擔하여 하므로 衡平에 어긋난다는 不平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초과취득학점에 대하여 登錄金은 賦課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팀의 전해로는 위의 두 가지 主張中後者が 보다 妥當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文教當局의 政策的인 決定事項으로 생각되므로 公式의 提示에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提示하였다.

4.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方法의 採擇

1) 季節學期運營費의 處理

「第Ⅲ章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의 必要性 및 算定方法」에서는 登錄金 算定方法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으나 細部의 算定方法의 採擇에 있어서는 다음의 要素가 先決되어야 한다.

첫째, 季節學期 運營에 따른 費用을 正常學期 運營費와 區分할 것인가의 與否가 決定되어야 한다.

季節學期의 運營에 따라 追加로 所要되는 費用

은 講師料, 冷暖房費 및 其他費用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費用은 正常學期 運營과는 관계없이 追加로 所要되는 變動費의 性格의 費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費用을 季節學期 申請學生에 대해서만 負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主張이 對立될 수 있다.

첫째, 季節學期 申請學生도 大學의 施設을 利用하게 되므로 固定費 性格의 費用中一部를 一定配賦基準에 의하여 負擔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된다.

둘째, 固定費 性格의 費用은 季節學期를 運營하지 아니하더라도 發生되는 것이며, 季節學期 運營에 따른 變動費는 相對的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고(時間當 講師料도 많이 支給하여야 하고, 冷暖房費 等의 運營이 正常學期보다 더 所要된다.) 또한 季節學期 運營의趣旨를 살펴 볼 때 固定費性格의 費用의一部를 附加하여 負擔시키는 것은 不合理하다는 主張이 있다.

위의 두 가지 主張中 첫번째 主張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 둘째번 主張보다 더 妥當하다.

① 大學의 施設을 利用하게 되므로 施設維持에 따른 費用의一部를 負擔하여야 衡平에 맞는다.

② 事務職員은 季節學期 登錄學生에 대한 諸般事務도 處理하게 되므로 事務職員 人件費(固定費性格)의一部도 負擔하여야 衡平에 맞는다.

그리나 첫번째 주장은 固定費 性格의 費用의一部를 어떤 基準에 의하여 配賦할 것인가의 問題에 있어서는 現實的으로相當한 어려움이 있다.

즉, 正常學期와 季節學期의 期間比에 의하여 配賦할 것인가 아니면 正常學期와 季節學期 申請學生數 또는 學點數에 의하여 配賦할 것인가의 問題가 先決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反論이 提起될 수 있다. 季節學期의 新設目的이 一部學生만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根本趣旨 自體도 모든 student들에게 均等한 機會를 賦與하고 있다.

따라서 季節學期에 申請하는 것은 student들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며, 결코 强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季節學期의 運營에 따른 變動費는 講師料도 季節의 特殊性 때문에 正常學期보다 훨씬 높을 것이豫想되며, 冷暖房費가 追加되므로

學點當 變動費는 正常學期의 學點當 負擔해야 할 運營費에 比해 크게 낮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大學運營에 따른 固定費까지도 一部를 季節學期에 負擔시킨다면 季節學期에서 取得하는 學點當 負擔費用은 正常學期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따라서 大學運營을 위한 固定費는 正常學期에 學生數에 따라 負擔시키고 變動費는 正常學期와 季節學期를 区分하여 負擔시키는 것이妥當하다는 主張이다.

本研究에서는 現實的인 計算問題를 고려하여 季節學期에는 固定費를 負擔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計算方法을 設定하였다.

2)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方法

學點單位 登錄金 算定方法은 全體 運營費를 全體學點으로 除하여 算定하는 方法과 全體運營費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나누어 算定하는 方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全體 運營費를 全體學點으로 除하여 算定하는 方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季節學期 運營費는 区分하지 아니하고 大學運營費에서 實驗實習費와 學點免除 特別試驗에 따른 費用만을 差減한 나머지 費用을 全體申請學點 總計로 나누어 算定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超過學點 取得分을 全體申請 學點數에 加算해 주는 가의 與否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公式이 導出되어 나온다.

A.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해 줄 경우

즉, 登錄金을 免除해 주지 않는 경우 :

$$[\text{大學運當費} - (\text{實驗實習費} + \text{特別試驗費})] \div \text{全體申請學點數} = \text{學點當登錄金}(A) \quad \text{實驗實習費} \div \text{該當學科學點申請合計} = \text{學點當 實驗實習費}(B)$$

$$(A) + (B) = \text{學點當 總登錄金}$$

이 方法은 매우 간편한 方法으로서 資料만 주어지면 쉽게 學點當 登錄金이 算出되어 나오므로 實務에 適用하기 쉽다.

그리나 季節學期 運營費가 正常學期 運營費와 混合되어 있어 季節學期 申請學點數가 크게 不足한 경우 季節學期 運營費는 相對的으로 크게 되어 季節學期에 受講하지 아니하는 student들이 不當한 負擔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方

法을適用할 때에는 季節學期의 申請學點數를
一定水準 以上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全體運營費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區分하
여 算定하는 方法

全體運營費에서 實驗實習費와 學點免除試驗에
따른 費用만을 差減한 나머지 費用을 固定費와
變動費로 나누어 算定하되,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合算하는 方法과 合算하지 않는 方法, 그리고 이
두 가지 計算 方式에 있어서 초과학점 취득분에
대하여 登錄金을 賦課할 것인가의 與否에 따라
4가지 算定方式이 도출되어 나온다.

A.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合算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學點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해 줄
경우

固定費 \div 18學點 = 學生 1人當 固定費 負擔額 (A)
變動費 \div 申請學生總數 = 學點當 登錄金 (B)

實驗實習費 \div 全體學點數 = 學點當 實驗實習費
(C)

(A) + 申請學點數 (B + C) = 學點當 登錄金
負擔額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하지
않는 경우

固定費 \div 學生 數 = 學生 1人當 固定費 負擔額
(A)

變動費 \div (全體學點數 - 超過學點數) = 學點當
登錄金 (B)

實驗實習費 \div (全體學點數 - 超過學點數) = 學
點當 實驗實習費 (C)

(A) + 申請學點數 (B + C) = 登錄金 負擔額

B.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分離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學點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하여
줄 경우

固定費 \div 學生 數 = 學生 1人當 固定費 負擔額
(A)

正常學期 變動費 \div 正常學期 申請學點數 = 學
點當 登錄金 (B)

(實驗實習費 포함)

季節學期 運營費 \div 季節學期 申請學點數 = 學
點當 季節學期 登錄金 (C)

(實驗實習費 포함)

(A) + 申請學點數 (B + C) = 登錄金 負擔額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하지
않는 경우

固定費 \div 學生 數 = 學生 1人當 固定費 負擔額
(A)

正常學期 變動費 \div (正常學期內 申請學點數
超過學點 取得分 - 超過學點取得分) (實驗實
習費 포함) = 學點當 登錄金 (B)

季節學期 變動費 \div (季節學期 申請學點數 -
超過學點 取得分) = 學點當 季節學期 登錄金
(C)

(A) + 申請學點數 (B + C) = 登錄金 負擔額
위의 A, B 두 가지 方式 中 A는 全體運營費를
全體學點으로 除하여 算定하는 方法에서 노정되
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B 方式은 季節學期의 運營費를 正常學期에서
分類하여 算定하므로 A 方式에서와 같은 問題點
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A, B 方式 공히
運營費를 어떻게 固定費와 變動費로 나눌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學
校會計體制 때문에 固定費와 變動費로 나누지
못할 경우에는 總經費를 總申請學生數로 나누어
간편식으로 계산해도 된다.

3) 固定費와 變動費의 區分

一般的으로 製造企業의 경우 固定費와 變動費
를 區分하는데 있어서 生產量을 增加시킬 때 原
價가 正比例 또는 어느 程度 比例하여 增加하는
가 아니면 거의 變動이 없는가의 與否에 따라
變動費 또는 固定費로 區分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에는 製造企業과 그 目的하는 바
와 基本의 性格이 다르므로 위의 區分方法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나 大體로 學生數의 增加
와 大學運營費의 相關關係를 가지고 區分하는
것이合理的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學生數의 增加는 申請學點數의 增加
를 가져오게 되므로 結果的으로는 學點數의 增
減과 關係 있는 費用을 變動費로 區分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大學運營中에 있어서 變動費로 區分될 費用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人件費中; 專任教員 및 講師에게 支給되는

給與

○其他教費中；獎學費

保健體力管理費(단, 事務職員 등
을 위한 費用 除外)

入試管理費

學生指導 自體經費

○實驗實習費；全體費用이 該當된다.

4) 國公立大學의 學點單位 登錄金 公式

앞에서 提示한 學點單位 登錄金公式은 國家로부터 補助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假定했을 때의公式이다. 國家로부터 補助가 있는 경우에도 施設費(資本的 支出)를 補助하기 위한 補助金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大學運營費에 포함된 施設費에 포함된 施設費 以外의 施設費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補助金이 特定目的, 例를 들면 어떤 研究事業을 支援하기 위한 目的으로 주어지고 이와 같은 支援의 結果로 研究事業이 活發히 展開되어 研究費 支出도 많이 增加할 경우에는 補助金과 研究費를 大學運營費와 關聯하는 收入 및 費用으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大學運營費의 補助를 目的으로 주어지는 補助金만이 大學運營費와 關聯되므로 앞에서 提示한 여러가지 formula에 補助金을 代入시켜 大學運營費에서 差減할 때 全體運營費를 全體學點으로 나눌 경우에는 全體運營費에서 補助金을 그대로 差減하여야 하나 全體運營費를 固定費로 나누어 formula을 유도한 경우에는 補助金을 어느 費用에서 差減해야 할 것인가는 問題가 된다.

本研究에서는 補助金에 特別한 但書가 없이 주어졌다며 區分된 固定費와 變動費 全額 比率로 나누어 差減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V. 假設 學點當 登錄金計算 例示

前節에서 提示된 여러가지 方法에 따라 學點單位 登錄金을 아래와 같이 假設例를 設定하여 算出하였다.

이 假設例를 세운 이유는 현재 大學 또는 大學院의 會計資料가 學點單位別로 登錄金을 算定

하기에 適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첫째, 季節學期 運營實績이 區分 經理되어 있지 않고, 實績도 充分하지 않으며, 둘째, 大學과 大學院의 運營實績이 區分 經理되어 있지 않고, 收入과 支出도 區分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앞에서 提示한 方法의 實用性을 檢證하고, 이 報告書를 읽는 사람의 理解를 돋기 위하여 現在 있는 某大學의 會計資料를 變形하여 假設例를 作成하였다. 該當大學에서는 大學院과 運營費가 區分, 經理되고 있으며 季節學期의 運營費도豫想하고 있다.

(1) 1979年度 1學期(正常學期)

① A大學의 1979年度 第1學期에豫想하는 運營費는 다음과 같다.(但, 大學院 運營費는 區分하여 除外한 後의 金額임)

人件費			(단위: 천원)
給與	교수직	186,050	
	사무직·기타	80,890	
賞與金	교수직	69,090	
	사무직·기타	28,670	
手當	교수직	10,500	
	강사료	35,020	
	사무직·기타	11,250	
雜給		25,940	
退職給與	교수직	6,030	
	사무직·기타	4,060	
其他校費			
需用費	사무용품비	1,250	
	비품비	65,360	
	인쇄비	4,080	
燃料費	연료비	3,590	
車輛維持費	차량유지비	7,380	
公共料金	전화료	2,580	
	전기료	6,340	
	수도료	580	
施設維持費	수선비	10,800	
圖書費	도서비	2,550	
研究費	학술연구조성비	18,690	
	출판비	6,820	
	연구보조금	67,300	
獎學金	학생장학금	94,450	
入試管理費	입시관리비	15,620	

其　他	25,000
<u>自律的經費</u>	
학도호국단비	4,500
學生自律活動費	22,900
<u>實驗實習費</u>	
실험실습비	18,680

施設費

財產取得費	14,680
大修繕費	55,680
施設附帶費	830
合　計	907,160

- (2) 第1學期에 登錄한 學生數는 總 2,890名 이었다.
- (3) 第1學期에 신청한 總學點數는 51,320學點이었으며, 이 중 超過取得學點數는 250學點이었다.
- (4) 特別試驗에 의한 초과 학점취득은 아직 實施하지 않고 있다.

(2) 1979年度 1學期의 季節學期

- (1) A大學의 1979年度 1學期의 季節學期 運營에 따라 追加로 所要될 것으로豫想되는 運營費는 다음과 같다.

人件費	
手　當	강사료
<u>其他經費</u>	
需用費	사무용품비
	인쇄비
圖書費	도서비
其　他	
合　計	22,130
24,780	

- (2) 季節學期에 등록한 學生數는 모두 450名 이었다.
- (3) 季節學期에 신청한 總學點數는 2,700學點이었다.
- (4) 季節學期에 實驗・實習을 要하는 科目을 開設하지 않았기 때문에 實驗實習費는 없다.

(3) 施設費의 範圍

正常學期에 計上된 施設費는 總 71,190천원이나 이 金額은 施設費를 包含한 正常學期 總運營費 907,160천원의 8%이하로서 許容範圍에 드는 施設費로 假定하였다.

(4) 實驗實習費

B學科에서 소요된 實驗實習費는 모두 1,230천원이며, 신청 총 學點數는 825學點이었다.

(5) 其他收入

授業料로 부과할 收入 以外에豫想되는 收入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u>納　入　金</u>	入學金	84,230
	受驗料	21,020
	證明料	2,150
	其　他	4,080
(원서대 및 수수료)		
<u>財團轉入金</u>		30,000
補　助　金	국내보조	5,000
雜　收　入	예금이자수입	48,940
	잡수입	870
(小　計)		196,290
<u>移　越　金</u>	전년도 이월금	16,340
	合　計	212,630

앞에서 주어진 假設例를 가지고 B學科 3學年學生이 正常學期에 18學點, 季節學期에 6學點을 신청할 경우의 登錄金을 算出하면 다음과 같다.

(1) 全體運營費를 申請學點으로 除하여 算出하는 方法

먼저 學點에 의하여 부담된 運營費를 다음과 같이 算定한다.

(단위 : 천원)

大學運營費	931,940
正常學期	907,160
季節學期	24,780
費用差減項目	△18,680
實驗實習費	18,680
其他收入差減項目	△196,290
納　入　金	111,480
財團轉入金	30,000
補　助　金	5,000
雜　收　入	49,810
신청학점에 의하여 부담할 金額	716,970
A.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해 줄 경우	
申請學點數	54,020學點
正常學期	51,320學點

季節學期	2,700學點
學點當 登錄金 (a)	13,280원
B學科 3學年生의 實驗實習費(b)	1,490원
B學科 3學年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13,280원 + 1,490원) × 18學點	265,86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9,680원
(13,280 × 6學點)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하지
 아니 할 경우.

申請學點數	53,770學點
正常學期	51,070學點(51,320 - 250)
季節學期	2,700
學點當 登錄金 (a)	13,340원
B學科 3學年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13,340원 + 1,490원) × 18學點	266,94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b)	80,040원
(13,340원 × 6學點)	

(2) 全體運營費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区分하여 算定하는 方法

먼저 全體運營費를 다음과 같이 固定費와 變動費로 区分한다.

(단위 : 천원)		
人件費	變動費	固定費
給與	186,050	80,890
賞與金	69,090	28,670
手當	45,520	11,250
雜給	15,940	10,000
退職給與	6,030	4,060

其他校費	
需用費	70,690
燃料費	3,590
車輛維持費	7,380
公共料金	9,500
修繕費	10,800
圖書費	2,550
研究費	25,510
獎學金	—
入試管理費	15,620
其他	25,000
自律的經費	27,400
施設費	71,190
合計	484,380
	404,100

(단위 : 천원)		
人件費	變動費	固定費
手當	22,130	—
其他校費		
需用費	—	930
圖書費	—	120
其他	—	1,600
計	22,130	2,650

正常學期 + 季節學期 合計 506,510 406,750

위에서 固定費와 變動費로 구분된 運營費에서
差減될 其他收入項目은 固定費다. 變動費 比率
에 의하여 配分하였다.

(단위 : 천원)		
	金額	比率
固定費	406,750	44.54%
變動費	506,510	55.46%
計	913,260	100.00%

其他收入의 区分

固定費對應	87,430	44.54%
變動費對應	108,860	55.46%
計	196,290	100.00%

差減後 殘額

固定費殘額	319,320
變動費殘額	
正常學期	380,300
季節學期	17,350
計	716,970

A.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합산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算해 줄 경우	
固定費 合計	319,320천 원
學生數	2,890명
學生1人當 固定費負擔額(a)	111,000원
變動費 合計	397,650천 원
申請學點數	54,020學點
學點當 登錄金(b)	7,360원
B學科 學點當 實驗實習費(c)	1,490원
B學科 學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0,300원
(111,000원 + 7,360원 + 1,490원) × 18學點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360원 × 6학점)	≒ 44,160원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지 않을 경우	
學生1人當 固定費 負擔額(a)	111,000원
變動費 合計	397,650천 원
申請學點數	53,770學點
學點當 登錄金(b)	≒ 7,400원
B學科 學點當 實驗實習費(c)	1,490원
B學科 學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 271,000원
{111,000원 + (7,400원 + 1,490원) × 18學點}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400원 × 6學點)	44,400원
B.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分離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여 줄 경우	
學生1人當 固定費 負擔額(a)	≒ 111,000원
正常學期 變動費	380,300천 원
正常學期 申請學點數	51,320學點
學點當 登錄金(b)	≒ 7,410원
B學科 學點當 實驗實習費(c)	1,490원
季節學期 變動費	17,350천 원
季節學期 申請學點數	2,700學點
學點當 季節學期 登錄金(d)	≒ 6,500원
B學科 學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1,200원
{111,000원 + (7,410원 + 1,490원) × 18學點}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410원 × 6學點)	≒ 44,500원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지 않을 경우	
學生1人當 固定費 負擔額(a)	111,000원
正常學期의 變動費	380,300천 원
正常學期 申請學點數	51,070學點
學點當 登錄金(b)	≒ 7,450원
B學科 學點當 實驗實習費(c)	1,490원
學點當 季節學期 登錄金(d)	6,500원
B學科 學生의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 271,320원
{111,000원 + (7,450원 + 1,490원) × 18學點}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450원 × 6學點)	44,700원
(1) 全體運營費를 申請學點으로 除하여 算定하는 方法	
A. 超過取得學點을 申請學點數에 가산해 줄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65,86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79,680원
※ 學點當 登錄金	13,280원
B. 超過學點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가산하지 아니할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66,94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80,040원
※ 學點當 登錄金	13,340원
(2) 全體運營費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區分 하여 算定하는 方法	
A. 季節學期 運營費用을 合算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해 줄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0,30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44,160원
※ 學點當 登錄金	7,360원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지 않을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1,320원
季節學期 6學期 申請時 登錄金	44,400원
※ 學點當 登錄金	7,400원
B. 季節時期 運營費用을 分離하여 計算하는 方式	
a. 超過時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여 줄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1,20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44,500원
※ 學點當 登錄金	7,410원
b. 超過學點 取得分을 申請學點數에 加산하지 아니할 경우	
正常學期 18學點 申請時 登錄金	271,320원
季節學期 6學點 申請時 登錄金	44,700원
※ 學點當 登錄金	7,450원